

서울고등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20374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씨엘

담당변호사 조상준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손환필

변 론 종 결 2022. 1. 20.

판 결 선 고 2022. 2. 10.

제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1가합3104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와 B(C생) 사이에 2019. 12. 14.경 체결된 7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2020. 2. 14.경 체결된 25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2020. 3. 6.경 체결된 102,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B가 이 사건 각 증여 무렵 채무초과 상태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자산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주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일부 채권을 회수하여 이 사건 피보전채권 일부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W)가 진행되어 원고가 일부 채권액을 배당받게 되었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그 배당액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소멸시킬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12. 22.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3호증), 피고와 B가 2020. 3.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함께 전입신고를 한 점(갑 제25호증),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야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석조, 판사 김길량, 판사 김용민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S아파트

T동

[도로명주소]

서울 서대문구 U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3층 아파트

1층 533.36㎡

2층 651.93㎡

3층 내지 10층 각 694.93㎡

11층 내지 12층 각 263.45㎡

13층 163.3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서대문구 R 대 1488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V호 철근콘크리트조 59.96㎡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4886.7분의 34.224. 끝.

